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90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1일, 이숙자 의원외 41명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숙자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재정지원의 범위는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제한되어 있어 사립의 초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음.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극도의 출산을 저하에 따라 학생수가 급감하여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수업료 자율화학교라 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립의 모든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대상을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함(안 제3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이숙자 의원외 41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90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사립 초등학교를 포함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사립학교」 제43조제1항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994년에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3조제1항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을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제1호)’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제2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²⁾

1) 「사립학교법」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2)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구분으로 인해 현재 모든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고,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그 외 사립학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안 제1290호(이숙자 의원 등 42명 의원안)개정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립학교 지원대상에 ‘사립 초등학교’를, 안 제1293호(박 석 의원안) 개정안은 제3조제1항제1호에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1]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안 제3조제1항)

안 제1290호(이숙자 의원 등 42명 의원안)	안 제1293호(박석 의원안)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생략) ②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생략) ② (생략)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 계획³⁾」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및 ‘재정자립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에서도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를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급별 재정지원의 차등에도 불구하고 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표-2]와 같이 실제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2] 2023년도 사립초등학교 재정지원 현황

(단위: 학급, 명, 원)

연번	학교명	학급수 (23. 5. 기준)	학생수 (23. 5. 기준)	목적사업비 보조금 (23. 12. 기준)
1	경기초등학교	24	574	644,339,230
2	경북초등학교	30	749	850,421,400
3	경희초등학교	23	671	782,591,580
4	계성초등학교	24	682	731,605,640
5	광운초등학교	21	587	743,863,850
6	금성초등학교	23	654	707,511,580
7	대광초등학교	18	494	828,304,840
8	동광초등학교	17	469	558,118,900
9	동북초등학교	24	745	880,638,720
10	동산초등학교	18	548	1,684,428,000
11	리라초등학교	18	500	607,692,000
12	매원초등학교	18	499	565,609,410
13	명지초등학교	30	705	756,058,160
14	상명대부속초등학교	12	347	584,268,600
15	상명초등학교	24	719	761,623,070
16	서울삼육초등학교	2	711	797,929,400
17	선일초등학교	17	442	607,432,990
18	성동초등학교	24	709	743,060,000
19	성신초등학교	18	488	634,105,280
20	세종초등학교	12	359	534,180,990
21	송의초등학교	18	501	663,713,600
22	신광초등학교	12	361	447,712,030
23	영훈초등학교	24	676	748,453,470
24	예일초등학교	17	479	574,817,000
25	우촌초등학교	21	565	671,831,930
26	운현초등학교	6	168	335,999,000
27	유석초등학교	12	340	527,829,800
28	은석초등학교	24	693	880,309,950
29	이화여대부속초등학교	24	624	720,951,400
30	중앙대부속초등학교	30	728	879,876,000
31	청원초등학교	24	709	1,418,425,960
32	추계초등학교	12	357	524,438,790
33	충암초등학교	26	667	812,123,960
34	태강삼육초등학교	24	758	803,672,540
35	한신초등학교	23	575	832,298,060
36	한양초등학교	24	667	1,348,743,640

37	홍익대부속초등학교	18	507	571,264,700
38	화랑초등학교	24	654	750,984,770
합계		760	21,681	28,517,230,240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등 위해시설⁴⁾ 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학교법인에서 20% 이상 대응 투자할 경우’ 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드라이비트해소 등 ‘국가지책 및 안전관리 사업’ 과 같은 경우 동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로 보아 사립초등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3] 사립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지원 현황

연도	지원학교	지원내역	지원금액
2023	선일초 등 18교	안전관리(내진보강) 2교 안전관리(정밀점검) 12교 안전관리(석면제거) 3교 방수공사 3교 소방시설 개선 1교	내진보강 72,800천원 정밀점검 225,350천원 석면제거 1,601,173천원 방수공사 316,800천원 소방시설 개선 1,100,000천원 총액 3,316,123천원
2021	충암초 등 4교	안전관리(정밀점검) 4교	정밀점검 716,531천원
2020	중대부초 등 60교	안전관리(내진보강) 8교 안전관리(정밀점검) 51교 안전관리(석면제거) 1교	내진보강 112,482천원 정밀점검 521,083천원 석면제거 200,000천원 총액 833,565천원
2019	세종초 등 60교	안전관리(내진보강) 54교 안전관리(정밀점검) 6교	내진보강 1,479,809천원 정밀점검 57,674천원 총액 1,537,483천원

4)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보수보강

- 재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심히 우려되어 시급히 조치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함)고 보고·확인된 사안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교원 기본급보조’ 및 ‘학급운영비’ 등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외국국적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에듀케어 운영 등 돌봄 관련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4]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연번	사업내역	지원대상 및 기준	예산액 (단위: 천원)
1	누리과정지원 (유아학비)	·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교육비 · 1인당 월 35만원 지원 (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186,027,240
2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만3~5세) 교육비 · 1인당 월 35만원 지원 (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2,218,440
3	저소득층 유아학비추가지원	· 법정 저소득층 유아 추가 교육비 · 1인당 월 최대 33.5만원 지원 (교육과정 25.5만원, 방과후과정 8만원)	1,218,060
4	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 일반학급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 1인당 월 최대 33.4만원 지원 (교육과정 25.4만원, 방과후과정 8만원)	256,512
5	유아학비부대경비 (신용카드결제수수료)	· 학부모부담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한 경우 결제 수수료 · 결제액의 0.01% 지원	5,000
6	에듀케어 운영	·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에 운영비 지원 · 원당 600만원	960,000
7	온종일돌봄교실	· 온종일돌봄교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원당 3,500만원	420,000
8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 에듀케어 유치원 자원봉사자 지원 · 인당 월50만원*12개월 지원	1,344,000
9	공영형 유치원	·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2023년도 현재 4개원	1,855,500
10	교원기본급보조	·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 1인당 최대 월77만원 지원 ·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22신설] 지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	39,727,800
11	교재교구비	· 에듀파인 도입 등 교육청 지원 조건을 이행한 사립유치원 · 학급당 월5만원 지원	-
12	학급운영비	· 원비 인상을 상한제 준수 등 교육청 지원조건을 이행한 사립유치원	13,939,200

연번	사업내역	지원대상 및 기준	예산액 (단위: 천원)
		· 학급당 월51만원 지원	
13	단기대체강사비	· 정규교원 수업결손에 대체강사를 고용한 사립유치원 · 1일당 96,240원 지원	577,440
합계			248,549,192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사립 초등학교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재정지원 사업 종류 및 범위는 동 조례 제4조5)에 따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조 제1호 규정에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을 기존의 사립 중학교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와 병기할 경우, 자칫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지원범위가 기존의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서울시의 사립 초등학교(38개교)는 공립대체형의 모습을 띄고 있는 타시도교육청과 달리 기존 공립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목

5)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업료 또한 835만원~1600만원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사립 초등학교에 기존 사립중학교 사립 고등학교와 같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982억 8천 7백만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정 지원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할 경우 2023년 기준 총 460개원의 사립유치원 인건비 및 운영 등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총 4,937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유치원에까지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지원대상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타 시도교육청 사립초등학교 재정지원 현황

연번	시도교육청	지원대상 및 사유	비고
1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초 6교 중 1교 지원 - 사유: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	재정지원조례에 사립초 포함
2	충청남도교육청	사립초 1교 중 1교 지원 - 사유: 읍면지역 학교로 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재정지원조례에 사립초 포함
3	전라남도교육청	사립초 3교 중 3교 지원 - 사유: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	재정지원조례에 사립초 포함
4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초 2교 중 2교 지원 - 사유: 수업료 자율화 학교지만 재정열악 (2013년부터 지원)	재정지원조례에 사립초 포함
5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초 2교 중 2교 지원 - 사유: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	재정지원조례에 사립초 포함
6	경기도교육청	사립초 3교 중 1교 지원 - 사유: 읍면지역 학교로 재정열악	재정지원조례에 사립초 미포함

[표-6] 사립 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추가 산정 예산⁶⁾

(기준일: 2023. 4. 1.)

학교수	교원수	재정결함보조금 추계액(천원)		
		인건비	운영비	합계
38	980	72,475,900	25,811,196	98,287,096

[표-7] 사립 유치원 재정결함보조금 추가 산정 예산⁷⁾

(기준일: 2023. 4. 1.)

유치원 수	교원수	재정결함보조금 추계액(천원)		
		인건비	운영비	합계
460	4,786	360,371,442	133,384,360	493,755,802

○ 한편 사립 유치원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시스템(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바, 향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등 유치원 운영 및 예산과 관련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현 시점에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를 교부금 사전기준 학교에서 제외한다⁸⁾는 점을 근거로 동 개정조례안에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

6) 2023년도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내부 자료.

7) 2023년도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내부 자료.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관-15379, 2023.10.27.).

- 그러나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내용은 교부금 산정을 위한 산술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교육청이 사립 초등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단순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청이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응투자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⁹⁾하기도 하였는바, 교육청의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나. ~ 카. 생략

9)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7.25.). “안전 제일”... 자율형 사립고 안전시설 사업비 적극 지원해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난 안전시설은 대응투자 없이 지원해야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1. <u>사립의</u>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 2. (생략) ②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u>초·중등교육법</u> 」 제2조 중 <u>사립의</u> <u>초등학교</u>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